

강원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06. 9. 11.	규칙 제 935호	개정	2016. 4. 25.	규칙 제1512호
개정	2007. 11. 29.	규칙 제1006호	개정	2016. 4. 25.	규칙 제1512호
전부개정	2008. 3. 1.	규칙 제1024호	개정	2019. 2. 25.	규칙 제1700호
개정	2009. 2. 27.	규칙 제1059호	개정	2021. 1. 6.	규칙 제1830호
개정	2010. 2. 9.	규칙 제1179호	개정	2022. 4. 29.	규칙 제1894호
개정	2012. 3. 5.	규칙 제1298호	개정	2023. 12. 12.	규칙 제1975호
개정	2013. 11. 8.	규칙 제13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76조에 따른 강원대학교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09. 2. 27, 2012. 3. 5., 2021.1.6.)

제2조(용어의정의) ①공학교육인증이라 함은 재학 중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에 대하여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증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9)

②심화프로그램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0. 2. 9)

제3조(신·전입생 수용 및 프로그램 선택) ①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해당 심화프로그램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입생은 전입한 학기 내에 해당 프로그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화프로그램 수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0. 2. 9, 2009. 2. 27, 2012. 3. 5.)

②전입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수용되기 전에 이수한 과목 및 성적인정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 학칙」 제67조 및 제68조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세부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0. 2. 9, 2012.3.5. 2022.4.29.)

③전입생의 범위에는 학사편입학생, 일반편입학생, 복학생(심화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입학생), 모집단위간 이동자 및 재입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09.2.27, 2013.11.8)

④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료 전 최소 한 학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3. 5, 2016. 4.25, 2019. 2. 25., 2022.4.29., 2023.12.12.)

1. 부전공자<신설 2016. 4.25>
2. 복수전공자<신설 2016. 4.25>
3. 교직이수자<신설 2016. 4.25>
4. ROTC 군사 훈련생<신설 2016. 4.25>
5. 외국인 학생<신설 2016. 4.25>
6. 교류학생<신설 2019. 2. 25.>
7. 학·석사 연계과정자<신설 2022.4.29.>
8. 소속 심화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신설 2023.12.12.>

⑤ <신설 2012.3.5, 삭제 2013.11.8>

제4조(교과과정 편성 기준) 심화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교양, 전공기반 교과목(MSC 또는 BSM), 전공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 2012. 3. 5., 2021.1.6., 2023.12.12.)

1. KEC 2024(공학인증 기준)<개정 2016. 4.25., 2023.12.12.>
 - 가. <삭제 2016. 4.25>
 - 나. 수학·기초과학·전산학교과목(MSC) : 분야별 최소 한 과목 이상 편성(기초과학 및 전산학 분야 교과목 중 일부교과목은 실험·실습을 포함) <개정 2021.1.6., 2023.12.12.>
 - 다. 전공교과목 : 45학점 이상 (이 중 설계 교과목은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전공분야별 인증 요구 기준 이상 편성)<개정 2016. 4.25., 2023.12.12.>
 - 라. <삭제 2012. 3. 5.>
2. KCC 2024(컴퓨터·정보(공)학 교육인증기준)
<신설 2012. 3. 5, 개정 2016. 4.25. 2023.12.12.>
 - 가. <삭제 2016. 4.25>
 - 나. 수학·기초과학교과목(BSM) : 분야별 최소 한 과목 이상 편성
<개정 2016. 4.25. 2023.12.12.>

다. 전공교과목 : 45학점 이상(이 중 설계 교과목은 기초설계 및 종합 설계를 포함한 전공분야별 인증 요구 기준 이상 편성)<개정 2016. 4.25.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제5조(심화프로그램 이수 기준 충족 심사) ① <삭제 2013.11.8>

② <개정 2010.2.9, 삭제2013.11.8>

③당해 프로그램은 심화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정하여 이수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9, 2013.11.8)

④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심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3.11.8>

제6조(포트폴리오 및 CQI) ①심화프로그램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지속적 품질개선(CQI) 보고서에 의거하여 강의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성적처리 마감일 후 일주일 이내에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포트폴리오는 제출 이후 4년간 관리 보존하며, 필요시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5.>

③ (개정 2012. 3. 5), (삭제 2023.12.12.)

④각 프로그램의 CQI를 위해 매학기 주요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센터에 접수하고 센터는 해당부서와 협의 처리한다. (개정 2012. 3. 5)

제7조(프로그램별 시행세칙) ①각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캠퍼스별로 정한다. (개정 2010. 2. 9, 2012. 3. 5.)

② <삭제 2012. 3. 5.>

부 칙(2008. 3. 1 규칙 제102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9. 2. 27 규칙 제10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9 규칙 제11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5 규칙 제129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3. 11. 8 규칙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6. 4.25 규칙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9. 2. 25. 규칙 제17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6. 규칙 제18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2. 4. 29. 규칙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3. 12. 12. 규칙 제19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